

중 국

[판례 분석]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미술저작물의 독창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26. 07. 15.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이미지라도 창작자가 색채, 구도,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 세부 장식 등을 통해 개성적 표현을 부가하였다면 미술저작물로서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소재나 중심 건축물의 동일성이 아니라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 요소의 조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됨.

1. 현황

최근 중국에서는 SNS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창작물이 빠르게 유통되면서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등 각종 저작물이 상품 판매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실물 상품의 표면 도안으로 무단 사용되는 분쟁이 계속 문제되고 있음. 특히 쟁점이 되는 저작물이 현실에 존재하는 도시 경관이나 건축물 등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이미지인 경우 현실 풍경을 기반으로 한 표현이 어디까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지, 그리고 유사한 이미지가 상품 도안으로 사용된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음. 본문에서는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SNS 삽화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도안으로 사용되어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하여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의 독창성 판단 및 그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浙0110民初22402号
관할 법원	1심	저장성 항저우시 위항구 인민법원(浙江省杭州市余杭区人民法院)
당사자	A 씨	
		1심: 원고

	B 회사, C 회사		1심: 피고
핵심 쟁점	1심	1.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회사와 C 회사의 민사책임	
판결 결과	1심	1. B 회사는 A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2. B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을 배상해야 함. C 회사는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음.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権法) 제9조 제10조 제54조 제59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5조, 제26조		
최종 판결일	2025년 11월 20일		

(1) 사건 개요

A 씨는 X SNS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자연 경관과 도시 풍경을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 삽화를 공개해 왔음. A 씨는 2022년 5월 19일 <특별한 하루>(이하 "사건 이미지 1"이라 함), 2022년 10월 31일 <초겨울 소도시 시리즈-크리스마스>(이하 "사건 이미지 2"이라 함), 2023년 2월 3일 <도쿄타워 벚꽃 시즌>(이하 "사건 이미지 3"이라 함)을 각각 창작하고 이를 샤오홍슈에 공개한 뒤 이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한편 B 회사는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개설한 점포에서 사건 이미지 1, 2, 3과 유사한 도안(이하 각각 "분쟁 이미지 1, 2, 3"이라 함)이 인쇄된 방수 손가방 등 상품을 판매하였음. 이에 대해 A 회사는 B 회사가 무단으로 분쟁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B 회사 및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B 회사가 무단으로 분쟁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B 회사는 사건 이미지들이 이미 존재하는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하여 독창성이 없고 분쟁 이미지들 역시 사건 이미지들과 다른 현실 풍경 사진을 소재로 사건 이미지들보다 앞서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음. 한편 C 회사는 자신이 단순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고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방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①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

② B 회사의 법적 책임 및 C 회사의 연대 책임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

① 사건 이미지의 권리 귀속 및 독창성 판단

저작권 관련 원고자료, 원본, 합법출판물, 저작권등록증, 인증기관이 발급한 증명 및 권리취득 계약 등은 저작권 귀속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저작물에 성명이 표시된 자연인은 반대증거가 없는 한 저작권자로 추정됨. 본 안건에서 A 씨가 사건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과 최초 공개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반증이 없으므로 A 씨가 사건 이미지들의 저작권자로 인정됨.

사건 이미지들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사건 이미지들이 비록 현실에 존재하는 창작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이를 기초로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 발현된 지적·창조적 표현을 융합하였으므로 독창성이 인정됨. 따라서 사건 이미지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한편 B 회사가 제출한 공증서와 창작 초고 스크린샷에 관하여 공증서의 형식적 진정성 자체는 인정되나 B 회사가 법원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창작 초고의 원본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창작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디지털 파일 생성시간은 변경이 용이한 점 및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B 회사가 분쟁 이미지들을 사건 이미지보다 앞서 창작했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음.

② 실질적 유사성 판단

B 회사가 Y 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한 가방에 사용된 분쟁 이미지들과 사건 이미지들을 대비한 결과 전체적인 색상배합, 이미지 구도의 선택과 배열 등 독창적 표현에 있어 양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존재함. 각 사건 이미지와 분쟁 이미지 사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음.

a. 분쟁 이미지 1과 사건 이미지 1 비교

건축물 정문 위에 대문자로 된 문패가 있는 점, 화면 좌측 하단의 꽃수레, 화면 우측 하단의 분홍색 소형차, 화면 중앙 우측의 분홍색·흰색 줄무늬 차양을 가진 상점 등이 유사함.

b. 분쟁 이미지 2와 사건 이미지 2 비교

이미지 우측 건물의 발코니에 걸린 초록색 고리 모양 장식물, 화면 하단 난간에 부착된 초록색 리본과 붉은색 매듭 장식, 상점 입구의 크리스마스트리, 분홍 보라색의 하늘, 좌측 가로등에 달린 세 개의 전구 등의 방면에서 서로 유사함.

c. 분쟁 이미지 3과 사건 이미지 3 비교

도로변에 주황색과 노란색 차양을 가진 상점이 배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의 줄무늬가 세 개이

며, 화면 우측 하단에 벚꽃이 배치되어 있고, 도로 한쪽에 두 대의 차량이 앞뒤로 밀접하게 배치되어 앞차가 뒤차의 좌측 전조등을 가리는 형상이 서로 유사함.

상술한 각 이미지들 사이의 공통된 요소들이 공유의 영역이나 앞서 존재하는 기존 저작물의 표현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유사성은 단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분쟁 이미지들이 사건 이미지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③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a.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및 발행권 침해 여부

B 회사가 A 씨의 허가 없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건 이미지들이 사용된 상품을 전시 판매한 행위는 A 씨가 사건 이미지들에 대하여 가지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및 발행권을 침해함.

b. 복제권 침해 여부 판단

본 안건에서 B 회사가 분쟁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의 생산자로서 무단으로 분쟁 이미지들을 도안으로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한 행위가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함.

첫째, B 회사의 법정대표이자 지배주주인 개인이 서면답변서에서 분쟁 이미지들이 자신이 설계,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둘째, B 회사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등록 사용하는 상표는 위 법정대표인 개인이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었음. 셋째, 해당 상품의 판매 웹사이트에는 자신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가방 분야의 브랜드로서 이미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등 각국에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B 회사가 분쟁 이미지를 사용한 상품의 생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회사가 해당 상품을 무단으로 생산한 행위는 A 씨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됨.

2) 법적 책임

① B 회사의 법적 책임

B 회사는 A 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발행권 및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배상액에 관하여 A 씨가 법정배상액에 따른 산정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사건 이미지들의 독창성 및 상업적 가치, B 회사의 관련 상품의 판매 현황, B 회사의 침해행위의 성질 및 주관적 과실의 정도, B 회사가 해당 상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 점, A 씨가 주장하는 생산자 책임의 범위가 모든 유통 경로에 미치는 점, 해당 상품 판매 링크 중 분쟁 이미지가 사용된 비율 및 분쟁 이미지가 상품 거래액에 기여한 비율, A 씨가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② C 회사의 법적 책임

C 회사의 연대 책임 여부에 관해서는 분쟁 이미지가 사용된 상품 링크 등 관련 침해정보가

이미 삭제된 점, A 씨가 본 소송 제기 전에 C 회사에 대하여 침해신고를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C 회사가 침해행위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항을 고려하면 C 회사는 B 회사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3. 판례분석

1)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미술저작물의 독창성 판단 기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독창성은 통상 독립적 완성과 최소한의 창조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됨. 여기서 최소한의 창작성이란 저작자가 소재의 선택, 배열, 표현에 있어 자신만의 개성적인 판단을 발휘하였는지를 의미하며 반드시 높은 수준의 예술성이나 감상적 가치를 요구하지 아니함. 문제는 창작자가 현실에 존재하는 풍경이나 건축물과 같은 현실 풍경을 소재로 삼아 창작한 경우 그 결과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실제 사진을 소재로 회화를 창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진 속 인물이나 장면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라 그 소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방식이 보호되는지에 따라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사진작가 설(薛) 모씨가 화가 연(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¹⁾에서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촬영 저작물의 경우에도 촬영 대상의 선택, 촬영 시기와 각도, 촬영기법 및 사후 편집 과정 등에 창작자의 판단과 선택이 반영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설 모씨의 사진과 연 모씨의 회화가 전체 구도, 장면 배치, 인물의 자세, 표정, 복장, 물품의 배치 등에서 고도로 유사하다고 보았음. 특히 법원은 사진과 같이 현실의 풍경이나 대상을 소재로 창작한 저작물에서 인물 자체는 창작의 소재에 불과하지만 그 저작물에 나타난 화면 형상, 즉 구도, 명암 대비, 인물의 세부 자세와 표정, 의복, 물품 배치 등은 작품 표현의 유기적 구성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연 모씨가 단순히 설 모씨의 사진의 주제를 참조한 것을 넘어 사진 작품의 독창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본문의 판례 역시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이미지에서 보호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법리적 문제를 다룸.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A 씨의 사건 이미지들이 도쿄타워, 바르셀로나의 건축물, 캐나다 퀘벡의 거리 등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소재로 하였더라도 창작자가 이를 단순히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색채, 구도,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 발현된 지적·창조적 표현을 부가하였다면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B 회사가 사건 이미지들이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독창성을 부정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는 현실 풍경이나 사진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소재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소재를 어떠한 색채와 구도, 장면 구성, 세부 요소의 조합으로 표현하였는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2011)朝民初字第20681号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미술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면서 작품의 소재나 주제 자체가 아니라 화면의 전체적인 색상배합, 구도 요소의 선택과 배열, 세부 장식 등 구체적 표현 요소를 중심으로 대비하였음. 이러한 판단 방법의 핵심은 저작물이 다루는 소재나 주제의 동일성이 아니라 그 소재를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표현 요소 즉 구도, 배치, 색채, 세부 장식 등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있음. 이는 저작권법이 아이디어 또는 소재 자체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그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됨.

사건 이미지와 분쟁 이미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B 회사가 주장한 차이점은 주로 개별 구성 요소의 외형적·부분적 차이에 관한 것이었음. 예컨대 건물의 개수와 배치가 다르다거나, 이미지 좌측 하단의 요소가 자전거인지 꽃수레인지 다르다거나, 좌우측 건물의 형태와 창문의 배치가 다르다거나, 중심 소재가 도쿄타워인지 에펠탑인지 다르다는 식의 항변은 모두 작품을 구성하는 개별 대상의 종류, 수량, 위치 등의 차이에 초점을 둔 것임. 이는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이미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소재 차이 또는 세부 요소 차이를 근거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려는 접근임.

반면 법원은 이러한 개별적 차이보다 이미지 전체에서 나타나는 독창적 표현 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주목하였음. 다시 말해 법원은 특정 건축물이 도쿄타워인지 에펠탑인지, 건물의 개수가 완전히 동일한지와 같은 소재상의 차이를 결정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건축물 정문 위의 대문자 문패, 꽃수레와 분홍색 소형차의 배치, 분홍색·흰색 줄무늬 차양, 초록색 고리 모양 장식물, 난간의 리본과 붉은색 매듭, 크리스마스트리, 분홍 보라색 하늘, 세 개의 전구가 달린 가로등, 도로변의 주황색·노란색 차양 상점, 세 줄 횡단보도, 벚꽃 배치, 앞뒤로 밀접하게 놓인 두 차량 등 여러 요소가 화면 안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음. 이는 개별 사물 하나하나가 동일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표현 요소가 어떤 색채와 구도, 위치 관계, 장식적 분위기 속에서 조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판단 방식임.

무엇을 유사성 판단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함의를 지님. 저작권법은 도쿄타워, 에펠탑, 유럽풍 건물, 크리스마스 거리, 벚꽃길과 같은 개별 소재나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음. 따라서 단순히 같은 현실 풍경이나 같은 종류의 건축물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음. 그러나 창작자가 그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방식, 색채를 배합한 방식, 세부 장식과 사물을 특정한 위치에 배치한 방식이 창작자의 개성을 드러낸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이 될 수 있음. 법원이 유사하다고 본 부분은 바로 이러한 보호 가능한 표현 요소들의 조합임.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의미는 분쟁 이미지들이 사건 이미지들의 일반적 소재나 분위기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미지들에서 독창성이 드러나는 구체적 표현 요소의 조합을 상당 부분 재현하였다고 보았다는 데 있음. 즉 B 회사가 지정한 일부 세부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사건 이미지들의 핵심적인 창작적 표현이 분쟁 이미지들에 재현되었다는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임.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현실 풍경을 소재로 한 삽화라도 창작자의 색채 선택, 구도, 구성요소의 배열 등 개성적 표현이 부가되면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소재 자체나 중심 건축물의 동일성이 아니라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 요소의 조합이 그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浙0110民初22402号
(2011)朝民初字第20681号